#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고시

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운 항과 질서유지 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.

#### 2016년 11월 24일

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## 제1조(적용범위)

이 고시는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낚시어선으로 선장을 포함한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(이하 "낚시어선업자"라 한다), 선원 및 낚시어선의 이용 승객(이하 "낚시승객"이라 한다)대하여 적용한다.

### 제2조(영업시간)

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(이하 "낚시어선"이라 한다)의 영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레이더 및 야간항해장비 설치 낚시어선
- 가. 하절기 (4월1일~10월31일) : 04:00~22:00
- 나. 동절기 (11월1일~익년 3월31일) : 05:00~20:00
- 단, 영업시간내 야간영업을 하고자 하는 낚시어선은 어선검사증서 상 야간 운항 허가를 받고 어선 내에 하우스 및 핸드레일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.
- 2. 2톤 미만 선외기 설치 낚시어선, 레이더 및 야간항해장비 미설치 낚시어선 또는 어선검사증서 상 야간항해금지 낚시어선 : 일출 30분전~일몰 30분후까지 (기상청 발표기준)

## 제3조(영업구역 제한)

- ① 낚시어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해역 및 구역에서 낚시승객으로 하여금 낚시어선 선상에서 낚시를 하게 하거나, 낚시를 하는 장소에 안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1. 3톤 미만 낚시어선은 해안선으로부터 3마일 이상 3톤 이상 5톤 미만 낚시어선은 해안선으로부터 5마일 이상

- 2. 원자력안전법,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, 항만법,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, 해사안전법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출입통제 또는 제한구역
- ② 낚시어선업자는 간출암과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(방파제 등)에 낚시인을 안내 하여서는 아니 된다(단, 항만관리청이 친수시설로 개방하여 낚시어선에 의한 이용객 수송을 허용한 시설은 예외로 한다).
- ③ 영업구역은 울산광역시 연안일원{영해(領海)의 외측한계(外側限界)}으로 제한한다. 영해의 외측한계 기준점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다.

#### 제4조(야영금지)

낚시어선업자가 당해 낚시어선에 낚시승객을 승선시켜 안내할 수 있는 낚시장소에 안내하는 경우에 그 낚시승객이 야영을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낚시어선업자가 지역여건상 낚시승객의 안전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낚시어선을 야영장주변에 대기시키고 낚시승객들에 의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# 제5조(유어질서 확립과 낚시객의 안전을 위한 영업제한)

낚시어선업자는 유어질서의 확립과 낚시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공유수면 또는 면허어장에 뗏목 등 잡종선(널빤지, 합성수지류 등)을 부설하고 그 구조물의 상판에 낚시승객을 하선시켜 영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 제6조(인명안전을 위한 장비착용)

인명안전 및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승객에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, 낚시승객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.

## 제7조(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)

- 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장소에 낚시승객을 안내할 경우에는 낚시승객과 상호연락 체계(선주, 선원, 낚시승객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록)를 유지하여 급작스런 기상악화 등 상황발생시 낚시승객을 안전하게 대피 조치하여야 한다.
- ②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낚시승객이 승선하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교육시킨 후 출항하여야 한다.
  - 1. 낚시승객은 안전운항 등에 있어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, 낚시 어선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  - 2.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승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대비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 해양경비안전관서·경찰관서 또는 군부대·소방서 등에 인명대피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.
  - 3.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승객 안전을 위해 인명구조장비 사용법, 긴급상황시 비상탈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.
- ③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선자명부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, 낚시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르지

아니할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.

- ④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 전 항해·통신·기관·추진장치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 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.
- ⑤ 낚시어선업자는 V-PASS(어선위치발신장치) 또는 통화가 가능한 무전기, 휴대폰 등의 통신기기를 영업중인 낚시어선에 설치 또는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중단하여 연락이 두절되면 아니 된다.
  - 단. 출입항신고기관(관할 해양경비안전센터 또는 출장소)에 통신기기 중단 사유를 사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.
- ⑥ 대행신고소 출입항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 전까지 경찰관 상주 출입항 신고기관(관할 해양경비안전센터 또는 출장소)에 전화 등 유무선 통신을 활용 하여 승선인원 및 출입항 신고를 하여야 한다.

#### 제8조(낚시승객 준수사항)

- ① 낚시승객은 안전운항 등에 있어 방해가 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낚시어선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  - 1. 낚시어선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
  - 2.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선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
  - 3. 영업시간 외 항해, 영업구역 외 지역안내를 요구하는 행위
  - 4. 승선자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신분증 제시요구를 거절하는 행위
- ②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.

## 제9조(기타 준수사항)

- ① 낚시어선업자는 다른 시·군·구의 관할수역 내의 낚시장소에 낚시승객을 안내하거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구역에 대하여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한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.
- ② 이 고시에 따른 영업시간 및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낚시어선 운항 및 낚시승객의 안전상 제한사항이 발생하여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낚시어선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③ 낚시어선업자, 선원 및 승객은 선내 주류(주세법상 정의 참조)를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.

-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고시(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-104호)는 폐지한다.